



보도	2025.9.11.(목) 조간	배포	2025.9.10.(수)	
담당부서	전자금융감독국 지급결제제도팀	책임자	팀 장	류정무 (02-3145-8795)
		담당자	선 임	홍영오 (02-3145-8796)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 PG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자금을 신탁, 지급보증보험으로 외부관리(60% 이상)
- PG사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6.1.1.부터 전면 시행

I 추진 배경

- 전자상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카드사 등과 판매자(가맹점) 간의 정산을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규모도 확대**

*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규모(통계청) : ('15년) 54조원 → ('24년) 242조원

** 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규모(한국은행) : ('15년) 47조원 → ('24년) 381조원

- 다만, '24.7월 티몬·위메프(PG) 사태로 대규모 피해(약 1.3조원)가 발생하며 PG사 정산자금*의 안전한 보관·관리 필요성이 부각

* PG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

- 이에, PG사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등 PG업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 ①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②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사 조치근거 마련 ③ PG업 정의 명확화 등

⇒ 금융감독원은 법 개정·시행 전에도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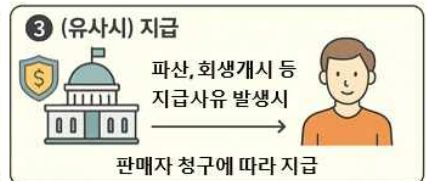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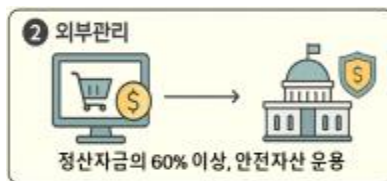
- PG사, 정산자금관리기관(은행, 보험사),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T/F('25.2~7월)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 '25.9.9.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

II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은 PG사의 “①**정산자금 산정** → ②**외부관리** → ③**(유사시) 지급**”
全 과정을 규율

- ① **[정산자금 산정]** 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 등 정산자금을 매 영업일 단위로 산정
- ② **[외부관리]**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 지급보증보험으로 외부관리하고,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
- ③ **[(유사시) 지급]** PG사의 파산, 회생개시 등 지급 사유 발생시 정산자금 관리기관이 판매자에게 정산자금을 지급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1

정산자금 산정

- 정산자금은 PG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으로 판매자에게 정산할 금액과 결제 취소 등으로 이용자에게 환불할 금액 등을 포함
- 정산자금은 매 영업일별 잔액 기준으로 산정

2

외부관리

-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하고, 부족금액은 다음 영업일까지 보완

* 국회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최초 외부관리 비율(60% 이상)을 감안

- 외부관리금액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의무화

* 신탁으로 외부관리시 신탁업자가, 지급보증보험으로 외부관리시 PG사가 운용의무 부담

3

[(유사시) 지급]

- PG사의 파산, 회생개시 등 지급 사유* 발생시 은행, 보험사 등 정산자금 관리기관은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

* 파산선고, 회생개시, 해산결의, 등록 말소, 자발적 폐업 및 지급의무 불이행 등

※ PG사는 판매자가 지급 사유 발생시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PG 계약 체결시 외부관리 방식, 정산자금관리기관 정보 및 지급 사유·절차 등을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안내

Ⅲ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1 기대 효과

- PG사가 판매자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외부관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참 고] 가이드라인 도입 전후 자금흐름



2 향후 계획

- 가이드라인은 PG사*의 전산 개발,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 등 이행 준비기간(~'25년말)을 거쳐 '26.1.1.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
 -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라 등록한 PG사('25.9.3. 현재 184개사)
-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착하도록 PG사 등의 외부관리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제도 시행 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수렴·개선해 나갈 계획

[참 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붙임 참조)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① 정산자금 산정	- PG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과정에서 일시 보유하는 자금 - 일별 잔액 기준으로 정산자금 산정 → 60% 이상 외부관리
② 외부관리 방식	- 신탁·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 - 매 영업일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부족시 다음 영업일까지 보완
③ 외부관리금액 운용 (안전자산 운용)	- 신탁으로 외부관리시 신탁업자의 안전자산 운용 필요 - 지급보증보험으로 외부관리시 PG사의 안전자산 운용 필요
④ 보호조치 고지	PG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보호조치 고지 및 홈페이지 안내
⑤ 지급 사유·절차	- 파산선고, 회생개시, 해산결의, 등록 말소, 자발적 폐업 등 -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
⑥ 시행 시기	'25년말까지 유예기간 부여 후 '26.1.1.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 및 이용자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정산자금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판매자 및 이용자에게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고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정산자금의 보호

제1절 정산자금의 범위 및 산정 방법

제3조(정산자금의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판매자등”[판매자(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용자, 또는 정산자금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자 등(판매자·이용자가 보유한 청구권의 양수인 및 판매자·이용자를 위하여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정산자금을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정산자금의 범위 및 산정 방법) 제3조의 정산자금은 매 영업일 기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등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판매자에 대한 정산·지급 목적으로 수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액
2.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소 또는 환불 등이 발생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등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의 상대방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취한 금액 중 아직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금액
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업무(이하 “직불업”이라 한다) 영위에 따라 판매자등에 대한 정산·지급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
4.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이하 “선불업”이라 한다) 영위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으로 수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액 중 이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을 완료한 금액(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서 판매자등에 대한 정산·지급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
5.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의 업무(이하 “결제대금예치업”이라 한다) 영위에 따라 수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액 중 소비자의 구매확정 등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필요성이 해소된 금액
6.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이하 “전자고지결제업”이라 한다) 영위에 따라 수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액

제2절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기준

제5조(정산자금의 외부관리)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4조에 따른 정산자금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관리(이하 “외부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외부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신탁
2. 지급보증보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산자금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부관리할 수 있다.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유통업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6조(정산자금관리기관의 범위) 제5조제1항의 정산자금관리기관은 <별표 1>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제7조(외부관리방법의 요건) 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탁은 수익자를 판매자등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판매자등을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제2호의 지급보증보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급보증보험의 내용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표 1> 제2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정산자금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할 것
2. 피보험자는 판매자등으로 할 것

제8조(외부관리 금액의 운용)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산자금을 외부관리하는 경우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정산자금을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산자금을 외부관리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자금을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외부관리 금액의 운용방법) 제8조에 따른 정산자금의 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산자금을 관리하는 경우,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정산자금을 <별표 2>에 따른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할 것
2.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산자금을 관리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별표 3>에 따른 안전자산으로 운용할 것
3.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1호에 따라 정산자금의 운용을 지시하거나 제2호에 따라 정산자금을 운용할 때 정산자금과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으로 운용할 것

제10조(외부관리 기준 및 방법)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자금 외부관리시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정산자금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외부관리할 것
2. 제9조의 외부관리 금액의 운용방법을 정할 때 판매자등에 대한 지급에 필요한 자금 규모와 시기를 고려할 것
3.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정산자금을 점검할 것
 - 가. 점검주기: 매 영업일
 - 나. 점검사항: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액과 점검일을 기준으로 실제 외부관리 되어 있는 금액을 비교 및 점검
4.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3호에 따른 점검 결과, 점검일을 기준으로 실제 외부관리되어 있는 금액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할 것
 - 가.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제5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외부관리하는 경우에는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까지 그 부족한 금액을 추가하여 외부관리할 것
 - 나. 가목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에도 외부관리 되어 있는 금액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즉시 이를 통지할 것

제11조(외부관리 정산자금의 보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외부관리 정산자금 양도의 예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산자금을 양도할 수 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흡수합병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정산자금을 양도하는 경우
2.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자금과 관련된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정산자금을 양도하는 경우

제13조(정산자금관리기관의 유사시 외부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자금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자금관리기관으로부터 정산자금을 돌려받고, 돌려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외부관리하여야 한다.

1.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제14조(관리 실효성 확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자금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정산자금 관리 담당자를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집행임원으로 지정할 것
2. 정산자금 관리 담당자가 정산자금 관리상황(관리체계의 취약성 점검 결과 등을 포함한다)에 대해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에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

제3절 판매자등에 대한 정산자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제15조(정산자금의 지급)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판매자등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 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을 해당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4.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6. 폐업한 경우(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7.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등에게 계약상 정해진 사유 없이 정산 기한까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정산자금관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자금 관리기관이 제15조에 따라 정산자금을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등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판매자등의 동의를 받아 정산자금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자금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판매자등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7조(정산자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등이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자등이 정산·지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판매자등의 청구를 받은 정산자금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산자금을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판매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것
 - 가.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한도로 할 것
 - 나.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을 곱하여 산정할 것. 다만,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이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등별 정산자금 전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할 것
 -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부터 제16조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것
 - 나. 판매자등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것
 - 1)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2) 정산자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자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항을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판매자등에게 개별 통보하며,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
 - 1) 정산자금의 지급 사유·시기 및 방법
 - 2) 그 밖에 정산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 ③ 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제5조제2항제1호의 방법과 제5조제2항제2호의 방법을 병행하여 외부관리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을 판매자등에게 우선 지급한다.

제4절 정산자금 보호 조치 관련 고지의무

제18조(보호조치 고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제5조,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정산자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9조(보호조치 고지 세부사항)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제18조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정산자금 보호조치 내용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2. 정산자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 정산자금의 지급 사유, 판매자등의 청구방법 등 정산자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을 매월 말(월 종료 후 5영업일 이내)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게시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 칙<2025. 9. .>

제1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25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 정산자금관리기관과의 계약 체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유효기간) 이 가이드라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1> 정산자금관리기관의 범위

1. 정산자금을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외부관리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중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5)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정산자금을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외부관리하는 경우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중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별표2> 안전자산의 종류(신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이하“은행등”이라 한다) 예치
 -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5)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국채, 지방채
3.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부보금융회사)가 지급보증한 채무증권
4. 은행등이 발행한 양도성 예금증서
5. 은행등이 발행한 채권(후순위채권 및 주식관련채권은 제외한다)
6.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7.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8. 환매조건부 채권(다만, 대상증권은 제2호 내지 제7호에 속한 채권에 한함)
9. 해당 신탁업자에 대한 대출채권(다만,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별표3> 안전자산의 종류(지급보증보험)

1. <별표2>에 해당하는 안전자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MMF)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상 위험등급이 6등급인 집합투자증권